

의안번호	2211842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5. 8. 28.
추 계 번호	25A4134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국선대리인 선임대상 확대 －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대상을 고충민원인까지 확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천 2백만원, 2030년 2천 2백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1천 2백만원(연평균 2천 2백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국선대리인 선임대상 확대 (안 제59조의2)	22	22	22	22	22	112	2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의2 (국선대리인)	○ 국선대리인 선임대상 추가 - 고충민원 신청인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9조의2(국선대리인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5년간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향후 국선대리인 선임대상 확대(고충민원인)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
 - 고충민원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현행 이의신청의 최근 3년간(2022~2024년) 연평균 국선대리인 선임비중(8.5%)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현행 국선대리인 신청 및 선임대상은 이의신청,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인이며, 그 가운데 이의신청이 처분청 단계에서 진행되고 비쟁송적·행정적 구제 성격에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
 - * 과세전적부심은 “사전적 예방”, 심사청구는 “준사법적 판단” 성격이 강함
 - 국선대리인 건당 국선대리비는 최근 3년간(2022~2024년) 동일하게 지급된 금액(15만원)¹⁾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

- (제도 개요)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이의신청인, 심사청구인,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변호사,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²⁾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
 - 상속세,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 제외

[표 2]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

구분	내용
개인 신청요건	•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, 재산평가액(부동산, 자동차, 전세금,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,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 평가합계액) 5억원 이하
법인 신청요건	•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: 3억원 이하 •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가액: 5억원 이하
신청 또는 청구세액	• 5천만원 이하

1) 국세청 답변자료

2)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

나. 추계방법 및 결과

- 국선대리인 고충민원인 선임대상 추가에 따른 재정소요액의 추계방법은 국선대리인 선임 추정건수에 건당 국선대리비(15만원)을 적용하여 추계
- 최근 3년간 이의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정건수는 2022년 3,432건 가운데 213건(6.2%), 2024년 2,850건 가운데 273건(9.6%) 등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수는 253건(8.5%)으로 나타남

[표 3] 최근 3년간 이의신청의 국선대리인 선임현황

(단위: 건, %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연평균
전체건수	3,432	2,668	2,850	2,983
국선대리인 신청 및 선임	213	272	273	253
비중	6.2	10.2	9.6	8.5

자료: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고충민원인의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150건으로 추정
 - 국선대리인 선정건수(150건)는 최근 3년간 고충민원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건수(1,764건)에 이의신청 국선대리인 선정건수 비중(8.5%)을 적용하여 추정

[표 4] 최근 3년간 고충민원 현황 및 국선대리인 선임 추정

(단위: 건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연평균(A)
고충민원 건수	1,781	1,801	1,709	1,764
국선대리인 선임추정(=A×8.5%)				150

자료: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국선대리인 선임대상에 고충민원인 추가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2026년 2천 2백만원, 2030년 2천 2백만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총 1억 1천 2백만원(연평균 2천 2백만원) 추계됨
- 고충민원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추정건수(150건)에 국선대리인 건당 국선대리비(15만원)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,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5] 향후 국선대리인 선임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추가재정 소요액	22	22	22	22	22	112	22

IV. 부대의견

- 비용추계 기간 동안 고충민원 건수가 기존 추세 대비 큰 폭의 증감을 시현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도 연동하여 변화할 것이므로 그 경우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 또한 과소·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